

(붙임 2)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15. 5.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추진일정	1
4. 사업기간	1
II. 제안요청 내용	2
1. 사업내용	2
2. 제안을 하는 업체에 대한 설명	2
3. 입찰가격 산출내역	3
4. 참여 예정팀의 구성내용	3
III. 용역업체의 선정	3
1. 참가자격	3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8
3. 낙찰자 선정절차	9
4. 사업예산	10
IV. 일반 안내사항	11
1. 제안서 작성요령	11
2. 제안서 제출	11
3. 제안서의 효력	13
4. 제안 유의사항	14
5. 평가 방법	15
6. 평가항목 및 배점	15
7. 기술능력 세부평가 기준	16
8. 평가관련 유의사항	17
9. 보안관련 유의사항	17
[붙임] 별지서식	19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2. 사업목적

-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부문별 시장 포지셔닝 전략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 뉴 비전 선포에 따른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 합리적 시장 전망 등에 기초한 경영계량목표 수립 및 질적인 측면의 경영 내실화 중점 추진

3. 추진일정

- ☐ (제안서 제출마감) 2015년 6월 2일 오후 5시
 -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출마감일 + 2영업일
 - ☐ (협상적격자 통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
 - ☐ (가격 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 + 2영업일
 -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성립일 + 2영업일
-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 및 조정 가능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 개최

II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내용

- ☐ 주요 사업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 ☐ 경영환경 변화 및 역량 진단
 - 주택(금융)시장 환경 변화요인 분석
 - 경쟁 환경 및 시장참가자와의 역할 분석
 - 공사의 핵심역량 및 위협요인 등 분석
 - 시사점 도출
- ☐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 ☐ 주요 사업부문별 중장기 발전방안
 - 사업부문별 시장규모 전망
 - 공사의 역할 및 시장 포지셔닝 전략
 - 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방향
 - 공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 정책목표 수준
- ☐ 비전 등 가치체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전략목표별 중장기 경영 전략과제 도출
 - 전략과제별 세부실행과제 수립

2. 제안을 하는 업체(기관)에 대한 설명

- ☐ 일반적 사항
 - 업체(기관)현황 : 일반현황, 재무현황
 - 최근 3개년간 영업실적
 - 법인의 조직, 인원 현황 등
 - 기타 업체(기관) 소개

☐ 구체적 사항

-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주택 및 주택금융 관련 연구용역(유사 용역)에 대한 실적 및 내용(최근 3년간*) : 별지서식 제5호

* '12.4.1~'15.3.31

-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공공 및 기타 기금 등
- 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증보험사 등

3. 입찰가격 산출내역 (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 ☐ 가격제안서 : 별지서식 제2호(산출근거 별도 작성)

4. 참여 예정팀의 구성내용

- ☐ 구성내용 및 주요이력 : 별지서식 제6호

III 용역업체의 선정

1. 참가자격

- ☐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주택 및 부동산금융 관련 연구용역(유사 용역)을 수행한 경험(실적)이 있는 기관*

*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회 등 학술단체 포함

- ☐ 공사 계약규정 제4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5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일반기업

* 1차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2차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규정 제5조의2제3항 및 제5조의3제1항에 의거 일반기업 참여 가능

제5조의2(우선조달계약)

① - 생략 -

②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1. 제2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4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①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제59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 이하 중략 -

- 공사 계약규정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24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1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7.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99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9.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95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정당한 이유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제99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8.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사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⑨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⑩ 제8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을 요구하는 용역

- 입찰은 공사 계약규정 제58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
- 낙찰자 결정은 공사 계약규정 제100조 제1항 등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제100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 ①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9-17)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100점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제8조)
 -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
- 가격의 협상(제12조)
 -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을 협상하고,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의 제안가격으로 함

□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평가 ⇒ 순위에 따라 협상 ⇒ 최종 업체 선정

3. 낙찰자 선정 절차

□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 접수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

- 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평가하여 총점을 합산
 -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 제안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제안업체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점수를 합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 ② 협상대상자의 선정은 용역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합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에 따라 결정
- ③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④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위원단에서 평가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② 협상순위는 위 ①항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지식 능력’, ‘참여 인력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결정

□ 협상적격자 통지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①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1순위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
- ②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가감되는 내용에 따라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함
- ③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④ 협상적격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안사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계약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

4. 사업예산

□ 10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IV

일반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과약,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 제안업체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할 것
 - 가격제안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하되,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할 것
 -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할 것
- ☐ 제안업체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 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할 것

2. 제안서 제출

- ☐ 제출기한 : 2015년 6월 2일 오후 5시
- ☐ 제안서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 제출 시 미도착, 마감시한 경과 후 도착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6층)

□ 입찰참가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② 기타 별도로 정한 서류

□ 제안서

- ① 기술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② 가격제안서(부가세 및 제반경비 포함)는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③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함
- ④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⑤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

- － 입찰참여업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공사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됨

- (1)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 (2)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3. 제안서의 효력

-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 유의사항

-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안서는 시행문(별지서식 제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 ☐ 제안요청서 등의 제반 관련자료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을 예정임
-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 공사가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5.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 최종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로 함
- 최종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6.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80)	1) 기술 . 지식 능력	20
	○ 사업계획 내용의 이해도	(10)
	○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10)
	2) 참여 인력의 적정성	2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5)
	○ 책임연구자의 경력	(5)
	○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사업수행 능력	(10)
	3) 사업수행계획	20
	○ 과업 추진방법의 타당성	(10)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5)
	○ 추진일정의 합리성	(5)
	4) 연구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10
	○ 유관기관 전문가의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의 적합성	(10)
	5) 수행실적	10
	○ 유사분야 연구 및 과업 수행실적 ¹⁾	(10)
입찰 가격 평가 (20)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0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 [2 × (추정가격의80%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 - 추정가격의6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분으로 계산	

주 : 1) 최근 3개년('12.4.1~'15.3.31)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7.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1) 기술·지식 능력

○ 사업계획내용의 이해도

- 본 연구용역의 취지, 목적 및 범위 등을 이해하고 있는 지 여부

○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 과업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이행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도출과 이행 방안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2) 참여 인력의 적정성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자의 전공·연구분야의 전문성 평가
-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자의 해당분야 연구경력 적절성

○ 참여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구성원 수 포함)

- 과업수행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적정 연구인력의 참여 여부와 분야별 균형·조화 정도 평가

3) 사업수행 계획

○ 과업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 과업의 주요내용별 세부계획의 적절한 제시여부 및 실현가능성의 평가
- 연구기간내 해당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정의 합리성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연구인력의 적절한 배분 평가
-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물론 구축된 자문단 활용을 위한 일정 수립, 자문내용을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일정의 적절 여부

4) 연구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전문가의 자문·협력체계 구축의 적합성
 -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단 등 협력체계 구축

5) 수행실적

- 유사분야 연구 및 과업 수행실적*

* 최근 3개년('12.4.1~'15.3.31)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8. 평가관련 유의사항

-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함
- ☐ 공사가 제시한 제안요청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9. 보안관련 유의사항

- ☐ 공사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공사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
- ☐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지 제 1 호 서식]

○○○ 회 사 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15. . .

수 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참 조 기획조정실장

제 목 제안서 제출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술제안서 10부

2015. . .

업 체 명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주 관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 타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업 체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2015. . .

(법인날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제82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사항을 입찰공고한 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불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불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15. . .

업 체 명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illegible]

주 : 가급적 1페이지로 작성

[별지 제 5 호 서식]

유사 용역수행 실적

(단위 : 억원, 명)

기간	용역내용	발주처	금액	투입인력	비고
계					

※ 유의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작성

* '12.4.1~'15.3.31

※ 계약 체결 시 증빙서류 첨부 : 실적증명원 원본, 계약서(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표지) 사본(원본대조필) 중 선택

2015. . .

업 체 명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참여 인력 요약

[illegible]

주 : 1)책임연구원(1인),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2)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기관이 확인한 이력서 제출(공문포함)

[별지 제 7 호 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위 임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용역 관련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기 위임내용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공사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서

당사는 『중장기 경영전략』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